윤 리 규 정

목 차

윤 리 규 범

세부실천규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제 2 조 (용어 정의)

제 3 조 (주관부서)

### 제 2장 구성원의 자세

제 4 조 (경제적 이익 수수 및 공여 금지)

제 5 조 (부정청탁의 금지)

제 6 조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금지)

제 7 조 (회사 자산 및 정보 보호, 사적 사용금지)

제 8조(이해상충 행위의 금지)

제 9조(불합리한 업무수행의 금지

### 제 3장 법규 및 사규의 준수

제 10조 (국제상거래)

제 11 조 (정확한 회계 및 기록)

# 제 4장 운영

제 13 조 (구성원의 책임 및 의무)

제 14조 (신고의무)

제 15조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 운영)

제 16 조 (서약서 작성)

제 17 조 (상벌)

## 윤 리 규 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SK 그룹의 경영철학을 토대로 임직원과 고객, 주주, 비즈니스 파트너 등 다양한 대외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며, 국 가와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

회사는 최고 수준의 윤리를 준수하고 사업 운영을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정직하 게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회사는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훌륭한 기 업시민이 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약속은 회사 준법경영의 토대가 되는 이 윤리 규정에 구체화되어 있다.

윤리 규정은 회사의 모든 이사, 임원 및 직원 (이하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회사를 대신하여 할당된 임무와 책임을 수행할 때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하는 기본 윤리 원칙을 명시한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름과 명성, 고객관계 및비즈니스 기회가 손상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법률을 위반할 수 있으며, 회사와 개인은 기소, 벌금, 구금 등에 처해질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는 모든 임직원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아래와 같이 회사는 이러한 윤리 원칙과 기준을 고객, 주주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에 적용한다. 또한, 이러한 윤리적 원칙과 기준은 사회적 가치 향상에 대한회사의 접근 방식을 나타낸다.

#### 고객

회사는 다음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i) 고객의 의견과 경험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구현한다,(ii) 고객의 자산 및 정보를 보호하고,(iii)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주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i) 주주의 합리적인 제안을 존중한다, (ii) 투명경영을 실천한다, (iii) 관련 법률 및 규

정과 회계 및 공시 기준을 준수한다. 주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여 간다.

### 비즈니스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공정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 국가와 사회경제 발전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국제법규 및 회계기준을 준수한다. 인종,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친환경 기술개발에 노력하는 등 친환경 경영에 앞장선다.

### 세 부 실 처 규 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윤리규정 세부실천지침은 환경시설관리㈜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 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시설관리㈜ 구성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 정의)** ① 금품 : 현금, 유가증권, 선물, 특별할인 혜택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② 향응·접대: 식사, 음주, 레저활동 등의 수혜를 말한다.
  - ③ 편의 : 시설, 교통편, 숙박, 관광, 행사, 견학 및 시찰 등에 대해 금품 및 향응 · 접대 이외의 제공이나 지원을 말한다.
  - ④ 거래 목적물 : 자재, 용역, 시공, 임대, 식당 등 공사와 관련한 유·무상의 모든 거래행위의 대상물을 말한다.

- ⑤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를 말한다.
- ⑥ 외국공무원 등 : 외국정부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 종사자(국회의원 포함), 국제기구직원,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외국의 공적업무 수행자를 말한다.
- ⑦ 신고자 : 금품, 향응·접대 및 편의 등의 수수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 ⑧ 신고일 : 신고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날 또는 인지한 날로부터 주근무지에서 의 근무일 기준 3일 이내를 말한다.
- ⑨ 업무 : 임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직·간접의 사무를 말한다.
- ⑩ 성희롱 :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
- 제 3 조 (주관부서) 본 규정의 주관부서는 감사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 제 2 장 구성원의 자세

- 제 4조 (경제적 이익 수수 및 공여 금지) ①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공여하지 아니한다. 단,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편의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기념품은 예외로하다.
  - ② 부채의 탕감 또는 대리 상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차하는 행위, 보증의 수수 등은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
  - ③ 임직원 가족이 수수한 경제적 이익은 본인이 수수한 것으로 본다.
  - ④ 임직원 상호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거나 공여하지 아니한다.

-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①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와 관련하여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모든 회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모든 뇌물 수수 및 부패 방지에 해당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 ② 부정청탁이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알선을 하는 아래 각호의 행위 등을 말한다.
    - 1. 채용, 승진, 이동, 급여 복리후생 결정, 교육, 인사평가 등 인사에 관해 영향을 미치는 행위
    - 2. 입찰, 협력업체의 선정, 계약내용의 결정 등에 관여하는 행위
    - 3. 기타 사적 이익을 위해 청탁을 하거나 알선, 지시하는 일체의 행위
- 제 6 조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금지) ① 성희롱 금지 : 구성원 상호간 또는 이 해관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말 또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임직원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지위나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구성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형태의 언어 및 신체적 가혹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 ③ 허위보고 금지 :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은폐, 축소, 과장 보고를 하여 경영진이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 ④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비윤리 행위 금지
- 제 7 조 (회사 자산 및 정보 보호, 사적 사용금지) ①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독점 및 기밀 정보와 고객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회사의 독점 및 기밀 정보 보호는 회사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회사의 독점 및 기밀 정보를 다루는 임직원은 근무 중 또는 퇴사 이후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와 관련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
  - ② 회사 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횡령, 기물 유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사의 영업정보를 누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임직원과 주주의 개인정보를 누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회사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회

- 사 비용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⑥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타사에 이중 취업하거나 다른 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 제 8 조 (이해상충) 임직원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임직원은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으며,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건전한 판단의 독립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투자 또는 제휴를 하지 아니한다.
  - ① 임직원이 회사정보, 자산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하지 아니한다.
  - ②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임직원 및 가족이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 9조 (불합리한 업무수행의 금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목적으로 불합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 3 장 법규 및 사규의 준수

- 제 10 조 (국제상거래)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규정 또는 기타 회사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외국공무원에게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 해외합작 Partner 나 Agent 등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금지 및 관련법규 준수의무를 명시하여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 11 조 (정확한 회계 및 기록) 회사의 업무 기록은 항상 정확하고 안전하게 저장되어야한다. 회사의 장부 및 기록은 모든 회사의 거래 및 회계규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을 정확하게 반영해야한다. 회사 장부 및 기록의 허위 또는 인위적 입력에 대한정보를 취득한 임직원은 즉시 감사담당 부서에 보고해야한다.
- 제 12 조 (공정경쟁) 시장에서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회사의 정책이며, 임직원은 회사의 고객, 공급업체, 경쟁업체를 공정하게 응대해야 한다. 임직원은 조작, 은닉, 정보의 남용,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 또는 기타 불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대한민국 및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공정거래법을 준수해야 한다. 가격 또는 거래 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완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쟁사와의 합의 또는 협의가 없어야 한다.

## 제 4 장 운영

- 제 13 조 (구성원의 책임 및 의무) ① 구성원은 제반 법률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비윤리행위를 목격하거나 제안 받았을 경우 이를 감사담당 부서에 제보할 의무를 갖는다.
  - ③ 감사담당 부서의 비윤리행위에 대한 조사 시 관련 정보제출 및 소명요구에 적극 협조하며, 특히 제4조(경제적 이익 수수 및 공여 금지) 위반에 대한 사실확 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 ④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정과 실천 가이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책임이 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 제 14조 (신고의무) 관련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 윤리 규정과 회사의 정책 및 절차를 위반했다고 생각되는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즉시 직책자 또는 감사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보자 보호규정에 따라 해당 보고의 기밀성과 익명성을 유지한다. 임직원의 법률, 규칙, 또는 회사의 규정 및 절차 위반에 대해 선의로 신고하는 자는 제보자 보호규정에 따라 보호되며,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임직원이 이해 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제 3 조에 명시된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받는 경우 또는 제 5 조에 명시된 부정청탁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임직원은 즉시 감사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5 조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 운영) ① 감사담당 부서는 구성원들의 윤리적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를 제정 및 운영할 수 있다.

- ② 부문 이하 단위조직은 해당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행동강령'을 별도로 제정 및 운영 할 수 있다.
- 제 16 조 (서약서 작성)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매년 문서 (별지서식 제 1 호)로써 서약한다.
- 제 17 조 (상벌) ① 임직원은 성실하게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 ② 임직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반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③ 임직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인지되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 종전의 윤리규범,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부정청탁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다.